

보건진료소 운영규정

제1조(명칭) 본소는 예원예술대학교 보건진료소(이하 "진료소"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진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장) ① 진료소에 소장 1인을 둘 수 있으며, 예원예술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진료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진료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진료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제4조(직원) ① 진료소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직원을 둔다.

② 진료소장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간호사(간호보조사)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업무) 진료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생 및 교직원의 진료
2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교육상담
3. 교내 환경위생관리
4. 각종 의료기구·의약품의 구입관리
5. 기타 진료소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으며 보건진료소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운영계획안에 관한 사항
2. 규정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8조(업무감독) 진료소의 업무는 입학홍보처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개정 2021.7.22.>

제9조(내규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.

부 칙 (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 7. 2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